

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

2019.02.11.제정 2019.08.22.일부개정 2021.07.01.일부개정 2022.04.27.일부개정
2023.01.02.일부개정 2023.09.01.일부개정

<국제교류팀>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「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」 및 법무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근거하여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어학연수생에 관한 제반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

1.)

1. 외국인 유학생(이하 “유학생”이라 한다)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이나,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또는 정부 초청, 외국 정부 파견 장학생 등 기관에서 추천에 의해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.
2. 외국인 어학연수생(이하 “연수생”이라 한다)은 한국어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본 대학교 한국 어학당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.

제2장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

제3조(주관부서)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 주관부서는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및 한국어학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. (개정 2021.7.1., 2023.9.1.)

1. 대학원, 학부 유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에 대한 지원 및 관리
2. 유학생 및 연수생의 출입국 및 사증발급 지원
3. 유학생 및 연수생의 학사 및 생활 안내
4. 기타 유학생 및 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

제4조(지원부서) ① 지원부서는 그 담당업무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를 위한 지원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2.4.27.)

1. 삭제 <2022.4.27.>
 2. 학사관리팀 및 각 학과(부): 학부 유학생의 학적, 수강 및 졸업과 관련된 지원업무
 3. 학생·장학봉사팀: 학부 유학생의 장학 선발 및 관리 지원
 4. 대학원행정팀: 대학원 유학생의 입학, 학적, 수강 및 졸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
 5. 생활관리지원팀: 유학생 및 연수생의 기숙사 입·퇴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및 관리
 6. 한국어학당: 연수생의 출입국 관련 사항, 입학, 학적 및 수강, 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및 관리
- ③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호 관련된 제반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매 학기 개강 전에 처리하여야 하며, 학기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로부터 2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8.22.)

제3장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

제5조(담당부서) ① 법무부의 유학생정보시스템 각종 자료 입력(제출)에 관한 사항은 각 담당 업무별로 국제교류팀과 한국어학당에서 담당한다.

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,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 받도록 한다.

제6조(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) 주관부서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라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을 소정의 기일 내에 입력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제7조(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증) 주관부서 및 한국어학당은 유학생정보시스템(FIMS)을 통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사증발급(인정번호)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문서 발급을 위한 각종 규정과 지침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제8조(변동신고) 주관부서 및 한국어학당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매 학기 등록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한 경우
2. 제적 또는 연수중단,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경우
3. 졸업 또는 수료가 된 경우
4.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

제4장 입학, 등록 및 졸업

제9조(입학정원) ① 학부 과정의 외국인특별전형 입학 정원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. (개정 2021.7.1.)

②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특별전형 입학 정원은 「대학원 학칙」에 따른다. (개정 2021.7.1.)

③ 연수생의 입학 정원은 「한국어학당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 (개정 2021.7.1.)

제10조(지원자격) 본 대학교에 지원하는 유학생 및 연수생은 각 과정별 해당학기 모집요강에 기재된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제11조(입학전형) ① 본 대학교에 지원하는 유학생 및 연수생은 각 과정별 해당학기 모집요강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② 유학생 및 연수생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면접(또는 화상면접)을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19.8.22.)

③ 유학생의 전형심사 결과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확정한다. (신설 2019.8.22., 개정 2021.7.1., 2022.4.27.)

④ 전형에 따른 제반서류의 원본은 국제교류처에 보관한다. (신설 2019.8.22., **개정 2023.9.1.**)
[본조 제목 개정 2021.7.1.]

제12조(등록금 및 장학금) ① 유학생과 연수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7.1.)

② 유학생과 연수생은 소속 과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제13조(졸업·수료 요건) ① 대학원 유학생의 졸업 및 수료 요건을 포함한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에 따른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② 학부 유학생의 졸업 및 수료 요건을 포함한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, 2023.01.02.)

③ 연수생의 수업, 성적, 수료 등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「한국어학당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 (개정 2019.8.22, 2021.7.1.)

제5장 생활지도 및 체류관리

제14조(오리엔테이션) ① 주관부서 및 해당 지원부서는 매 학기 1회 이상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 및 지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오리엔테이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(개정 2019.8.22.)

1. 출입국관리규정 및 준수 의무 사항
2. 학사 전반에 대한 안내
3. 하이포탈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서약서 준수에 대한 사항
4. 유학생보험가입 의무
5. 기숙사 및 학생 생활 정보
6. 안전준수사항 등 위기관리에 대한 사항
7.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8. 학교 시설 이용 및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

9. 기타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상담활동) ① 국제교류처는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, 2023.9.1.)

② 국제교류처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,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. (신설 2019.8.22., 개정 2021.7.1., 2023.9.1.)

③ 유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부(학과, 전공)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, 지도교수는 학업, 생활,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한다. (신설 2019.8.22.)

제16조(기숙사 생활) ① 유학생과 연수생은 기숙사 숙소를 우선 배정한다.

② 유학생과 연수생은 최초 6개월간 의무적으로 기숙사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제교류처장의 승인 하에 외부 거주를 허가 할 수 있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, 2023.9.1.)

③ 기숙사 생활수칙에 대하여는 「동명생활관규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출입국 관리) ① 국제교류처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출입국 관리를 해야 하며, 외국인 등록, 체류기간 연장, 체류자격 변경, 재입국 허가, 체류자격외활동 허가, 주소지 변경 등 사증 및 체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, 2023.9.1.)

② 출입국 관리 담당자는 유학생과 연수생의 학적 변동 및 학적사항을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7.1.)

③ 학과(부)에서는 유학생이 10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국제교류처에 통보하여야 하며, 국제교류처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7.1., 2023.9.1.)

제18조(유학생보험가입 의무) ① 유학생 및 연수생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본 대학교가 정한 유학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② 삭제 <2021.7.1.>

③ 삭제 <2021.7.1.>

④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, 수강신청 학점 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.

제19조(징계) 본 대학교에 수학중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. (개정 2021.7.1.)

제20조(취업신고 및 지도) ① 유학생 및 6개월 이상 체류한 연수생이 재학 중 체류자격외 활동

(시간제 취업 포함)을 희망하는 경우,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 체류자격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② 주관부서는 유학생 및 연수생이 제1항의 신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주관부서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도하고 체류자격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근로시간과 임금은 법적기준에 의거하도록 지도한다.

제21조(준용) 삭제 <2021.7.1.>

제22조(위기관리) 유학생 및 연수생의 사적 다툼이나 위법적 문제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교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를 한다. (개정 2019.8.22., 2021.7.1.)

제23조(유학생의 권익 및 준수사항) ① 유학생 및 연수생은 본 대학교의 내국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다. (개정 2021.7.1.)

② 유학생 및 연수생은 본교에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2. 유학생 및 연수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3. 삭제 <2019.8.22.>
4. 출입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체류기간 및 출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.

제6장 위원회

제24조(위원회 설치) ①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, 학사운영 및 학사지도 등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국제협력교류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유학생 및 연수생 관련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유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에 관한 사항
3. 연수생 등록금에 관한 사항
4. 유학생 및 연수생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5. 유학생 및 연수생 학생지도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
6. 유학생 및 연수생 생활관 입관에 관한 중요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[본조 신설 2019.8.22.]

[중전 제24호는 제26조로 이동 2019.8.22.]

제2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동명생활관장,

국제교류팀장, 학사관리팀장, 학생·장학봉사팀장, 대학원행정팀장으로 구성하되, 필요시 국제교류처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 2021.7.1., 2022.4.27., **2023.9.1.**)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에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[본조 신설 2019.8.22.]

제7장 기 타

제2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1.7.1.)

1. 본 대학교 학칙, 관련 규정 및 해당 자매대학과 체결한 교류협정
2. 「출입국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
3. 법무부 「외국인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」
4. 교육부 「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」

[제24조에서 이동 2019.8.22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